

# 대학원생 소속변경(전과) 업무처리 계획

[지도교수가 소속변경을 한 경우]

## □ 추진 근거

-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65조의2(대학원생의 소속 변경) 공포 (총무과-506(2022.1.18.))
- 지도교수가 소속을 변경한 경우, 해당 대학원생의 소속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운영기준 마련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

### 「서울대학교 학칙」

제65조의2(대학원생의 소속 변경) 대학원 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타 학과(부)·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 [신설 2022.1.18.]

#### 1. 지도교수가 소속변경을 한 경우

2. 소속 학과(부)·전공이 분리, 통합, 개편 등이 된 경우
3. 협동과정 등 신설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참여 학과(부)·전공에서 요청한 경우

## □ 용어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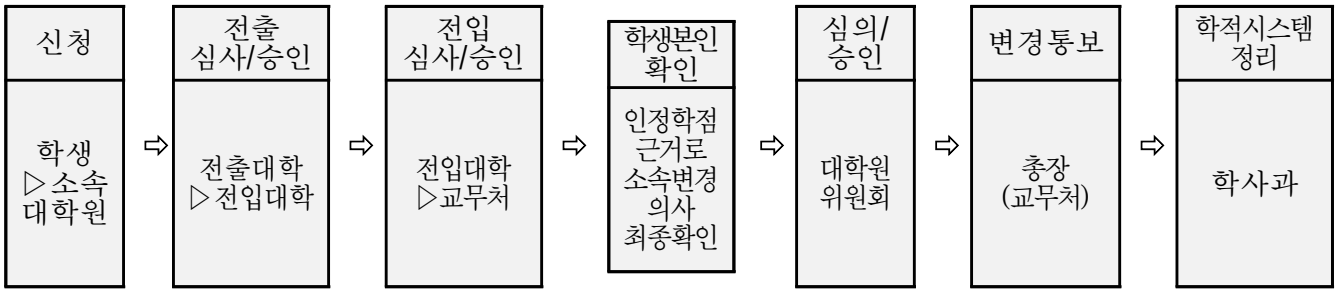
- “소속변경” : 대학원생이 현 소속 학부(과)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
- “전 출” : 현 소속 학부(과)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함
- “전 입” : 변경 희망 학부(과)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

## □ 소속변경 신청기준 및 절차

### ○ 신청기준

- 재적중인 학생만 소속변경 가능 (수료자·졸업자의 소속 변경 불가)
- 소속 변경된 지도교수의 소속 학과(전공)로만 소속변경 가능
- 동일 학위 과정간 소속변경만 가능
- 최초 입학 모집단위에서 1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만 신청 가능
- 일반대학원↔전문대학원, 일반대학원↔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↔전문대학원 소속 변경 모두 가능
- 소속변경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- ※ 별도의 법률로 정원을 관리하는 (치)의학대학원·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입·전출을 불허함
  - ※ 입학에 위한 별도 요건이 필요한 대학원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입 가능(ex 공학전문대학원 등)
  - ※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-석사과정 진행학생은 석박사 통합과정 없는 대학으로 이동할 시,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소속변경 가능
  - ※ 정원내-정원외 여석을 각각 산정하여 운영. (정원내↔정원외 이동 불가)

## ○ 신청 및 승인 절차



## □ 소속변경 기준 및 고려사항

\*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적용 내용을 모두 동의한 경우에 전출입 심사 진행

-	구분	적용 내용
1	등록금	• 소속변경된 대학(학과)의 등록 학기를 기준으로 등록금 산정
2	학점이수	• 기존 이수한 수업 중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수료학점 인정 가능 * 전입학과에서 불인정하는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수료학점 미포함
3	수료(졸업) 요건	• 전입대학(학과)의 수료(졸업)요건과 교과목 이수 방식 등을 따름 * 논문수업 수료학점 포함여부,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, 논문 심사기준 등 ** 기존 대학(학과)에서 합격한 논자시 인정이 불가하므로, 소속변경된 대학(학과)기준 논자시 재실시
4	여석	• 전입을 희망하는 대학(원)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전입 가능 * 정원내/정원외로 여석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함
5	학적사항	• 소속변경자의 학적사항(휴·복학, 징계, 이수학기)은 이전 사항을 통산함

## □ 여석산정

- 재입학(복적)시 산정한 여석을 활용해 소속변경자의 전입 여석 사용
- 여석 산출은 매년 1회 실시하며, 매년 1학기 사용되는 여석 중 남은 여석을 2학기 전입 학생에 적용 (2022년 2학기부터 여석 산출식 아래와 같이 변경)

구분	여석 산출식 (정원내)
기존	(전전년도 10.2.~ 전년도 10.1.) 제적생수 - 복적 및 재입학생수
변경	<b>[전년도 입학정원-(4.1일자+10.1일자 등록신입생수)]±소속변경 전출입학생수</b> + (전전년도 10.2. ~ 전년도 10.1.) 제적생수 - 복적 및 재입학생수

※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0조(대학원의 학생정원)에 근거하여 여석 산정에 입학정원 반영

※ 일반대학원 내부에서 학생 소속변경 시 여석에는 변동사항 없음

## □ 추진 일정 (2023학년도 2학기 전출입 희망자 대상)

- 신청서류 접수 : 2023. 5. 15.(월) ~ 5. 29.(월)
  - ※ 신청서류: 소속변경 신청서[별지1], 이수학점 인정신청서[별지2], 성적증명서
- 전출 승인대학 심의 : ( ⇨ 교무과·학사과·전입예정대학 공문 제출) ~ 2023. 6. 14.(수)
- 전입 승인대학 심의 : ( ⇨ 교무과·학사과 공문 제출) ~ 2023. 6. 23.(금)
- 학생 인정학점 확인절차 : ( 전입 신청대학 ⇨ 학생 확인) ~ 2023. 6. 30.(금)
- 대학원위원회 심의 : 2023. 7. 13.(목)
- 소속 변경 통보 : ( ⇨ 해당대학(원)) 2023. 7월 말
- 학적반영 : 2023. 9. 1.(금)

- 붙임 1. 대학원생 소속변경 신청서 1부  
2.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. 끝.

【붙임1】

대학원생 소속변경(전과) 신청서  
(수신: 전출 대학(원)장)

신청인	성 명		학 번		연락처	
	현 소속	○○ 대학(원)	○○학부(과)	[	○○ 전공]	
	변경 희망 대학(원)	◇◇ 대학(원)	◇◇학부(과)	[	◇◇ 전공]	
	외국어성적 입학시 인정여부	○ / ×		(제2)외국어 인정성적		
	취득학점	전공		이수과정	석사 / 박사 / 석박사통합	
	논문					

- 관련근거 :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65조의2제1호(대학원생의 소속 변경)
- 신청인은 소속변경시 발생하는 졸업(수료)요건, 학위종류, 등록금, 이수학점 등의 변동에 동의하며, 위와 같이 소속 변경(전과)을 신청합니다.

202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 청 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지도교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위 학생의 소속변경 지원을 ( 허가 / 불허 ) 합니다.

202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\_\_\_\_\_ ○ ○    대학(원)장    성명 \_\_\_\_\_ (직인)

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

**【붙임2】**

# 소속변경에 따른 이수학점 인정신청서

(수신: 전입 대학(원)장)

성명	학번		이수과정		석사 / 박사 / 석박사통합			
전출 학과	대학		학과		(전공)			
전입 학과	대학		학과		(전공)			
학 점 이 수 내 역								
이수학년도 -이수학기	세부학기 (정규/계절)	학점	성적	교과목번호	교과구분	교과목명	인정 여부	
2020-2	정규						○	X
							○	X
							○	X
							○	X
							○	X
							○	X
							○	X
							○	X
							○	X

붙임 : 성적증명서 1부

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신 청 인 (인)

※ 위와 같이 교과학점 \_\_\_\_\_ 학점 / 논문연구학점 \_\_\_\_\_ 학점을 인정함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\_\_\_\_ ○ ○   대학(원)장   성명 \_\_\_\_\_ (직인)

##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

본 신청인은 위 이수학점 인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(인)